

#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7. 6 (목)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8. 7(월)
- 다. 상정일자 : 2006. 8. 7(월) 제1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 제 안 이 유

- 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동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3. 주 요 골 자

- 가.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9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7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4억 7,200만원임.
- 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에 지방세 10억 1,860만원, 세외수입 61억 639만원, 지방교부세 9억 2,491만원, 재정보전금 28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5,0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9억 6,106만원, 국·도비보조금 3,245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에서 7,03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198억 2,734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2억 9,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3,895만원, 사업예산 87억 2,765만원, 예비비 등 기타 2,69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황**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가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필수적 경비의 추가반영 및 지방이양사업을 자원별로 구분 표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일반 및 필수경상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대한 부담금 등의 부담금 총당과 신규로 발생한 사업의 부족경비부담,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5. 검토내용 및 의견

### 가.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2006년 기정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 감액	%
합	계	234,202	100	205,158	29,043	12.4
일	반 회 계	181,730	77.5	161,680	20,050	11.0
특 별 회 계	상수도공기업	7,683	3.2	7,467	216	2.8
	소 계	44,788	19.1	36,011	8,777	19.5
	주택사업	547	0.2	547	0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250	0.5	0	1,250	100
	의료보호기금	439	0.1	394	44	10.0
	기초생활 보장기금	1,477	0.6	444	1,033	69.9
	수질개선	31,860	13.6	31,563	297	0.9
	공유재산관리	9,213	3.9	3,061	6,151	66.7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42억 25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0억 4,363만원(12.4%)이 증액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1,817억 3,023만원으로 200억 5,011만원(11.0%)이
  - 특별회계는 524억 7,234만원으로 89억 9,351만원(17.1%)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77.5%이고, 특별회계는 22.5%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인 106억 8,589만원 대비 2.9%가 증가한 109억 7,90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나. 일반회계 예산

###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2006년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81,730	100	161,680	20,050	12.4
자체수입	소 계	30,595	23,471	7,124	30.3
	지방세	13,082	12,064	1,018	8.4
	세외수입	17,513	11,406	6,106	53.5
의존수입	소 계	151,133	138,209	12,924	9.3
	지방교부세	93,798	92,874	924	0.9
	재정보전금	5,850	3,000	2,850	95
	국.도비보조금	51,485	42,335	9,150	21.6

○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817억 3,023만원으로 기정대비 12.4%인 200억 5,011만원이 증가되었음.

- 자체수입은 305억 9,500만원으로

· 지방세수입 130억 8,200만원, 세외수입 175억 1,300만원이고

-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3.1%인 1,511억 3,300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937억 9,800만원(51.6%),

재정보전금 58억 5,000만원(3.2%),

보조금 514억 8,500만원(28.3)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과 같이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세목별로 보면

#### ① 지방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2006년 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3,083	100	12,064	1,019	8.4
보 통 세	12,091	92.4	11,141	950	8.5
목 적 세	692	5.3	622	70	11.2
지난년도수입	300	2.3	300	0	-

-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8.4%인 10억 1,900만원이 증가된 130억 8,300만원으로
  - 보통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변동이 없으며 주민세가 55.2% 증액되었고
  -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세가 20%인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난해도수입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음.
- 이와 관련 징수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005년 12월 대비 1억 8,800만원이 감액된 45억 9,300만원이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7,513	100	11,407	6,106	53.5	
경상 적 세 외 수 입	소 계	6,219	35.5	5,897	321	5.4
	재산임대	227	1.2	227	-	-
	사 용 료	355	2.0	334	21	6.2
	수 수 료	1,444	8.2	1444	-	-
	사 업	1,586	9.0	1,586	-	-
	징수교부금	947	5.4	647	300	46.3
	이 자	1,660	9.4	1,660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소 계	11,294	64.4	5,509	5,785	105.0
	재산매각	7	0.1	7	0	-
	순세계잉여금	9,810	56.0	5,000	4,810	96.2
	이 월 금	475	2.7	0	475	-
	부 담 금	250	1.4	250	-	-
	잡 수 입	727	4.1	227	500	220.2
	지난년도수입	26	0.1	26	-	-

-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75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3.5%인 6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2,1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원이 증가되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8억 1,000만원, 잡수입이 5억원 신규로 이월금이 4억 7,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타 세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③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계	93,799	51.6	92,874	925	-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보통교부세 중 도로분 교부세는 17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 종합토지세 보전금 15억원, 분권교부세 4억 5,591만원,
  -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대비 0.9%인 9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 비중은 예산총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음.

### ④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계	5,850	-	3,000	2,850	95.0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를 지원받는 것으로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58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5%인 2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음.

⑤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제1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485	100	42,335	9,150	21.6	
국고보조금	소 계	39,749	77.2	34,145	5,604	16.4
	국고보조금	20,959	40.7	15,960	5,000	31.3
	국가균형특별회계	18,448	35.8	17,864	585	3.3
	기 금	341	0.6	322	20	6.1
시·도비보조금	11,736	22.7	8,190	3,546	43.3	

-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총 규모는 514억 8,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1.6%인 9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용은
  - 국고보조금 50억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5억 8,500만원
  - 기금이 2,000만원 각각 증가 되었음.
- 시·도비보조금은 총 117억 3,600만원으로 기정대비 43.3%인 3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 주요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고 및 도비보조금 주요사업 내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내시액	소관부서
국	시장경영혁신사업(진부시장)	300	기획감사실
	'05년도 신활력사업(추가)	400	기획감사실
고	월정사 흥예교 건립	200	문화관광과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500	문화관광과

구분	사 업 명	내시액	소관부서
국 비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150	문화관광과
	재활용창고 신축	106	환경복지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지소, 진료소)	428	보건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66	농 정 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상금)	2,974	기술개발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20	기술개발과
도 비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150	문화관광과
	지장암 삼성각 보수	100	문화관광과
	차항천(수해취약) 정비	100	건 설 과
	아름다운 간판바꾸기 사업	175	지역도시과
	도시계획도로정비(동계올림픽관련)	550	지역도시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소, 진료소)	107	보건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00	농 정 과
	몽골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244	축 산 과
	송어가공공장 건립 지원	200	축 산 과

- 특히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 재원으로
  - 우리군의 전체 세입에 28.3%를 점하고 있어
  - 앞으로 집행기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구상과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2)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181,730	100	161,680	20,050	12.4	
경 상 예 산	소 계	46,410	25.5	46,480	△70	△0.1
	인 건 비	25,052	13.7	25,811	△758	△2.9
	경상적경비	21,357	11.7	20,669	688	3.2



구 분		제1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사업 예산	소 계	123,863	68.1	104,036	19,827	18.5
	보 조 사 업	75,748	41.6	60,530	15,217	25.1
	자 체 사 업	48,115	26.4	43,505	4,609	9.5
채 무 상 환	소 계	477	0.2	477	0	0
	지방채상환	477	0.2	477	0	0
	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	0	0	-	0	0
예 비 비 등	소 계	10,979	6.0	10,685	293	7.0
	예 비 비	2,052	1.1	2,052	0	-
	기 타	8,926	4.9	8,633	293	3.3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17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대비 12.4%인 200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2.9%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3.2%, 보조사업 21.5%, 자체사업 9.5%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및 기타비용이 7% 증가하였음.

○ 이번 제1회추경에서는 사업예산이 18.5%인 194억 700만원이 증가한 1,238억 6,300만원으로 총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 신활력사업 브랜드 이미지강화 홍보물 설치 사업에 2억원
- 평창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2억 1,800만원

- 시장경영혁신 사업 4억 5,000만원
- 월정사 흥예교 건립사업 2억 8,500만원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소화시설 설치 3억원
- 평창군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 3억원
-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에 9억 9,800만원
- 재활용창고 신축 3억 5,300만원
- 간평리 오수처리시설공사 마무리 3억 1,000만원
-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2억 4,800만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 12억원
- 장례식장마당 지붕덮개공사 2억 5천만원
- 송어가공공장 건립지원 5억원
- 기타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기초행정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사업 등임.

①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181,730	100	161,680	20,050	12.4	
일반 행정비	소 계	42,168	23.2	41,728	439	1.1
	입법및선거관리	1,168	0.6	1,339	△171	△12.8
	일반행정비	40,999	22.6	40,388	610	1.5
사회 개발비	소 계	68,152	37.5	59,617	8,534	14.3
	교육 및 문화	14,113	7.8	11,136	2,977	26.7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23,616	13.0	21,445	2,170	10.1
	사회보장비	16,882	9.3	16,344	537	3.3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13,540	7.5	10,691	2,849	26.6

구 분		제1회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경제 개발 비	소 계	68,233	37.5	57,633	10,600	18.4
	농수산개발비	27,726	15.3	19,721	8,004	40.6
	지역경제개발비	4,265	2.3	1,824	2,441	133.8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4,741	19.1	34,675	65	0.2
	교통관리비	17,475	9.6	17,447	27	0.2
민방 위비	소 계	171	0.1	171	0	0
	민방위관리비	171	0.1	171	0	0
지원 및 기타 경비	소 계	3,004	1.7	2,529	475	18.8
	지방채상환	477	0.3	477	0	0
	제 지 출 금	475	0.3	0	475	0
	예 비 비	2,052	1.1	2,052	0	0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37.6%)와

사회개발비(37.5%)가 전체 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고

각 장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먼저 **일반행정비**는 아카데미 운영보조위탁, 연합단 GT사업단 운영, 농촌관광체험 마케팅, 농산물연합사업 판촉 및 홍보, 농산물연합사업 물류비 지원, 브랜드 인증, 재배기술개발, 브랜드 이미지강화 홍보물 설치 등의 신활력 사업에 24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1,800만원 2006 시장경영혁신사업에 4억 5,000만원 감성행정 혁신체계 구축에 1억 3,000만원 등이 있고

-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 월정사 흥예교 건립 2억 8,500만원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소화시설 설치 3억원
- 지장함 삼성각 보수 2억원
- 재활용창고 신축 3억 5,300만원
- 문화복지센터 설계용역 2억 5,000만원
- 민간경상보조금 2억 3,700만원
- 간평리 오수처리시설공사 마무리 및 하일리 오수처리시설  
이설공사 5억 1,000만원
- 아름다운 간판바꾸기 사업 3억 4,800만원
- 소도읍개발사업 8억 4,000만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 평창스포츠타운조성 기본설계 3억 5,000만원
- 도시계획도로정비 12억원
-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 10억 4,500만원
- 장례식장마당 지붕덮개공사 2억 5,000만원 등이 있으며

- 경제개발비는

-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 3억원
-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9억 9,800만원
- 백두대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2억 8,600만원
-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시범사업 2억원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억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억 3,200만원
- 몽골문화관광체험장 조성 2억 8,400만원

송어 가공공장 건립 지원 5억원

담수어 첨단 양어장 시설 1억 5,8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2억 4,9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4억 4,000만원

마을상수도 정비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인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 5,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이 1억 2,200만원이 편성 되었음.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각 기능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증감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2006기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2,472	100	43,478	8,993	20.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83	14.6	7,467	216	2.8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44,788	85.4	36,011	8,777	24.3
	주택사업	547	1.0	547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50	2.3	0	1,250	0
	의료보호기금	439	0.8	394	44	11.1
	기초생활보장	1,477	2.8	444	1,033	232.6
	수질개선	31,860	60.7	31,563	297	0.9
	공유재산관리	9,213	17.5	3,061	6,151	200.9

-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89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4억 7,200만원으로 20.6% 증가되었음

-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주요증가 내용을 보면
    -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 1억원,
    - 도암상수도 취수관정 보수 1,300만원
    - 그 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주요증가 내용을 보면
    - 지역주민지원사업 6억원, 황계 2리 마을회관보수 및 신축지원 1억 2,000만원, 황계2리 복지회관 신축지원 2억 8,000만원
    - 황계3리 복지회관 신축지원 1억 8,000만원 등이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음
-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1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전액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용자금이 증액된 것임.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증가내용으로는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처리비 1,770만원
  -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2,900만원, 그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이 증액되었음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6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동캠핑장 부지매입 1억원, 공유재산집단화를 위한 부지매입등에 5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라. 검토결과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형평을 보면 그동안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가용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 세수증대와 함께 예산 절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주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사전 연관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사업의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운용 되도록 하므로, 군정 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적시 적소에 투명하게 편성하여 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고
-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심층 분석하고 공기 부족과 미결 사업으로 이월·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2006년도 7월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며 예산안 제출 이전에 착공한 사업(평창군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의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과·소 실무자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8건 5억 5,800만원의 예산이 과목 경정(미전화가구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 평창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수리교체, 도수로정비사업 등)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각 부서의 예산편성 담당자의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10건 / 3억 8,500여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1건 / 5억 6,500여만원)  
민간자본보조금 (32건 / 32억 800여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건 / 1억 5,600여만원)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판단되었음.

- 마지막으로 2003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피해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평창군의 대표행사인 "노성제"와 같은 각종 축제행사를 취소한 예가 있는 것과 관련, 올해에도 우리군 전 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군민들이 수해피해를 입음에 따라 올해 개최 예정인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지도자 체육대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효석문화제 등)도 재검토하여 수해피해복구에 전환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행예산체제로 운영하여 국·도비부담 총당과 수해피해지원경비확보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기타 이를 제외한 200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2006. 7.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당초예산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

## 2. 주요골자

가.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4,20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9,04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0백만원이 증액된 181,730백만원, 특별회계는 8,994백만원이 증액된 52,473백만원임.

### 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1,019백만원, 세외수입 6,106백만원, 지방교부세 925백만원, 재정보전금 2,85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15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96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3백만원임.

###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70백만원, 사업예산 19,827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29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39백만원, 사업예산 8,728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27백만원임.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 산 총 규 모

200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총 계	234,202,576	205,158,943	29,043,633
일반 회 계	181,730,230	161,680,116	20,050,114
특별 회 계	52,472,346	43,478,827	8,993,51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83,680	7,467,370	216,310
기타특별회계	44,788,666	36,011,457	8,777,209
주택사업특별회계	547,001	547,001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50,010	0	1,250,01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9,323	394,991	44,332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477,958	444,228	1,033,730
수질개선특별회계	31,860,708	31,563,299	297,409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9,213,666	3,061,938	6,151,728

# 제입·제출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일반기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기정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세	계	234,202,576	100	205,158,943	100	29,043,633	181,730,230	100	161,680,116	100	20,050,114	52,472,346	100	43,478,827	100	8,993,519
	지방세 수입	13,082,828	6	12,064,219	6	1,018,609	13,082,828	7	12,064,219	7	1,018,609		0		0	0
	세외수입	40,841,678	17	25,774,222	13	15,067,456	17,513,167	10	11,406,771	7	6,106,396	23,328,511	44	14,367,451	33	8,961,060
	경상적세외수입	10,482,654	5	10,281,810	5	200,844	6,219,007	3	5,897,740	4	321,267	4,263,647	8	4,384,070	10	△120,423
	임시적세외수입	30,359,024	13	15,492,412	8	14,866,612	11,294,160	6	5,509,031	3	5,785,129	19,064,864	36	9,983,361	23	9,081,483
	지방교부세	93,798,830	40	92,873,920	45	924,910	93,798,830	52	92,873,920	57	924,910		0		0	0
	지방양여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정보전금	5,850,000	2	3,000,000	25	2,850,000	5,850,000	3	3,000,000	25	2,850,000		0		0	0
	보조금	80,629,240	34	71,446,582	35	9,182,658	51,485,405	28	42,335,206	26	9,150,199	29,143,835	56	29,111,376	67	32,459
	인	68,880,705	29	63,244,224	31	5,636,481	39,749,320	22	34,145,298	21	5,604,022	29,131,385	56	29,098,926	67	32,459
민	11,748,535	5	8,202,358	4	3,546,177	11,736,085	6	8,189,908	5	3,546,177	12,450	0	12,450	0	0	
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	계	234,202,576	100	205,158,943	100	29,043,633	181,730,230	100	161,680,116	100	20,050,114	52,472,346	100	43,478,827	100	8,993,519
인	27,572,988	12	28,139,037	14	△566,049	25,052,746	14	25,811,705	16	△758,959	2,520,242	5	2,327,332	5	192,910	
물	16,460,804	7	15,092,363	7	1,368,441	15,243,244	8	13,925,099	9	1,318,145	1,217,560	2	1,167,264	3	50,296	
이	36,752,703	16	31,010,357	15	5,742,346	35,657,908	20	30,043,810	19	5,614,098	1,094,795	2	966,547	2	128,248	
자	142,396,761	61	121,304,825	59	21,091,936	97,944,393	54	84,360,685	52	13,583,708	44,452,368	85	36,944,140	85	7,508,228	
용	1,532,155	1	445,228	0	1,086,927	0	0	0	0	0	1,532,155	3	445,228	1	1,086,927	
보	2,059,726	1	2,059,726	1	0	431,410	0	431,410	0	0	1,628,316	3	1,628,316	4	0	
내	4,873,116	2	5,055,188	2	△182,072	4,873,116	3	5,055,188	3	△182,072		0		0	0	
예	2,554,323	3	2,052,219	1	502,104	2,527,413	1	2,052,219	1	475,194	26,910	0	0	0	26,910	

# 제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비율 %	기 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기 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	기 정 예산액	구성비율 %	증△감
계	234,202,576	100	205,158,943	100	29,043,633	181,730,230	100	161,680,116	100	20,050,114	52,472,346	100	43,478,827	100	8,993,519
경 상 예 산	49,731,145	21	49,562,546	24	168,599	46,410,490	26	46,480,847	29	△70,357	3,320,655	6	3,081,699	7	238,956
인 건 비	27,572,988	12	28,139,037	14	△566,049	25,052,746	14	25,811,705	16	△758,959	2,520,242	5	2,327,332	5	192,910
경 상 적 경 비	22,158,157	9	21,423,509	14	734,648	21,357,744	12	20,669,142	13	688,602	800,413	2	754,367	2	46,046
사 업 예 산	170,788,260	73	142,233,258	69	28,555,002	123,863,651	68	104,036,302	64	19,827,349	46,924,609	89	38,196,956	88	8,727,653
보 조 사 업	106,951,216	46	91,729,537	45	15,221,679	75,748,399	42	60,530,970	37	15,217,429	31,202,817	59	31,198,567	72	4,250
자 체 사 업	63,837,044	27	50,503,721	25	13,333,323	48,115,252	26	43,505,332	27	4,609,920	15,721,792	30	6,998,389	16	8,723,403
채 무 상 환	2,677,247	1	2,677,247	1	0	477,075	0	477,075	0	0	2,200,172	4	2,200,172	5	0
지방채상환	2,677,247	1	2,677,247	1	0	477,075	0	477,075	0	0	2,200,172	4	2,200,172	5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등	11,005,924	5	10,685,892	5	320,032	10,979,014	6	10,685,892	7	293,122	26,910	0	0	0	26,910
예 비 비	2,052,219	1	2,052,219	1	0	2,052,219	1	2,052,219	1	0	0	0	0	0	0
기 타	8,953,705	4	8,633,673	4	320,032	8,926,795	5	8,633,673	5	293,122	26,910	0	0	0	26,910